● 행복안정망 지원

❶ 소상공인 행복복지 지원

○ 사업목적: 생계를 위해 휴식 없이 생업에 종사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장사하기 좋은 행복한 부산 구현

○ 사업내용: ① 소상공인 가족힐링캠프 개최 ②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활동 지원

❷ 사업정리도우미 운영

○ 사업목적: 안정적 사업정리와 철거비용을 지원하여 폐업 충격 완화

○ 사업내용: ① 폐업 예정 업체 대상 사업정리 도우미 ② 철거비용 지원

❸ 대학생 소상공인 서포터즈 운영

○ 사업목적: 지역 대학생 소상공인서포터즈와 소상공업체 1:1 매칭으로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소상공업체 마케팅을 포함한 경영관리 및 경영환경개선

● 골목상권 마케팅

❶ 우리동네 골목활력 증진

○ 사업목적: 상인주도형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매력있는 골목문화 생산

○ 사업내용: 특색 있거나 회생이 필요한 상권을 선정하여 골목 및 점포 환경개선

❷ 소상공인 업종 해결사 지원

○ 사업목적: 폐업률 높은 업종의 지역 소상공인에 찾아가는 1:1 맞춤형 업종전문컨설팅 서비스로 경쟁력 강화, 업종개선 솔루션 제작

○ 사업내용: 소상공업체 마케팅 등을 포함한 경영관리 및 경영환경개선

● 소상공인 부담 완화

❶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지원

○ 사업목적: 정부-지자체-민간이 공동구축한 제로페이 도입 및 인센티브 발굴을 통한 이용확산

○ 사업내용: 지역 특화 인센티브 발굴

① 공공부문 인센티브 발굴 유도 ▸ 법인용 제로페이 도입 등

② 여금휴가철 소비자 페이백 이벤트, 지역행사 연계경품 이벤트 등

(제로페이) 소비자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여 판매자계좌로 결제금액 이체
카드사, VAN사 등을 거치지 않아 수수료 0% 가능

❷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 사업목적: 폐업 등 어려움이 닥칠 때 생활안정,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여 소상공인 보호 강화

○ 사업내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장려금 지원 (월 1만원, 12회 지원)

(노란우산공제) 월 5~100만원까지 가입,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입금액의 90% 대출,
납입기간·연령·지급시기 관계없이 공제사유 발생시 지급, 압류금지 등

● 소상공인 매출액 증대 「동백전」 발행

○ 발행목적: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 발행개요

① 출시일: ‘19.12.30.

② 발행종류: 충전식 선불형 체크카드

③ 구매・충전: 동백전앱 또는 부산지역 은행지점(부산은행, 하나은행)

④ 인센티브: 결제시마다 개인 6%, 법인 2% 캐시백(리워드)

* 인센티브 구매한도: 개인 월100만원, 법인 월1,000만원

⑤ 사용처: 부산지역 내 IC카드 단말기 설치 가맹점

(사용처 제한)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준대규모점포
사행성 업소(카지노, 경마, 경륜, 체육진흥투표, 소싸움, 불법사행성게임)
프랜차이즈 직영점(단, 부산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는 모두 허용)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CATV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각 사업별 공모 및 지원신청 ▹(안내)수행기관 홈페이지 및 전화

수행기관	추진사업	연락처(051)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희망센터)	**[소상공인 특별자금 보증]** **[교육 및 컨설팅]** 희망아카데미·디지털마케팅 인력 양성 **[소상공인 부담완화]** 카드수수료 부담완화(인센티브 발굴)	860-6600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본부)	**[교육 및 컨설팅]** 온라인 및 바이럴마케팅 지원 맞춤형컨설팅 **[골목상권 마케팅]** 우리동네 골목활력증진사업 소상공인 해결사 운영 소상공인지원정책 안내 플랫폼 운영 **[행복안전망]** 행복복지 지원 사업정리도우미 운영 대학생-소상공인 서포터즈 운영 **[혁신성장]** 유망업종 공동·특화마케팅 지원 생활밀접업종 경영환경개선 브랜드·지식서비스 품질개선	600-1856, 1867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 [4억원]	861-9376

문의처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TEL 888-4781~7, 4792~5, FAX 888-4789

8-2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사업

추진목적

- 부산 봉제패션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봉제 소공인 경영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기반조성
- 부산 봉제산업 활성화를 통한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3. ~ 2021. 2.
- 사업지역 : 집적지(동구 범일동, 진구 범천동, 남구 문현동 일원 봉제 소공인(10인 이하 제조 사업장) 대상
- 사업내용 : 패션재단 기술 등 교육사업, 판로지원, 샘플제작 지원, 공동작업장 지원 등
- 주관기관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 총사업비 : 467백만원(국비 365, 시비 100, 민자 2)

지원내용

- 봉제·패션 소공인 경영기술 향상, 의류제조기술 향상, 경영 역량강화과정 운영
- 마케팅 ▷ 공동판매장, 판로연계, 모바일 마케팅, 샘플제작 지원
- 컨설팅, 멘토링 지원, 공동 제조장비 활용지원 등

이용방법

- 업체모집 : 2020. 3. ~ 2020. 4.
- 참가문의 및 신청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첨단소재산업과 TEL 888-6762 FAX 888-6739
(재)부산디자인진흥원 TEL 790-1062

8-3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지원목적

-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온라인 판매 급증, 무점포 영업 등 신유통 업태의 출현과 소비자의 구매형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회복
-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지원을 통해 상권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전통시장(인정) 및 상점가로서 사업주체를 보유한 시장
- 지원내용
  - 시설현대화 지원 : 시설물의 개·보수, 아케이드, 냉·난방시설 설치, 고객편의시설 등
  - 경영현대화 지원 : 상인교육, 시장 홍보사업, 공동마케팅, 상인워크숍, 전통시장 소식지 발간, 전국우수박람회 참가 지원 등
  -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 자부담이 어려운 영세시장 대상 소규모 환경 개선
  - 특성화 시장 육성 : 시장의 고유 특색을 특성화한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향상
- 지원규모
  - 시설현대화 : 159억원(43개 시장)
  - 경영현대화 : 2.2억원
  -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 10억원(25개 시장)
- 지원조건
  - 시설현대화 : 시설현대화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시장중 자부담 능력이 있는 시장
    ▷ 부담비율 : 시비 75%, 구비 25%, 상인 10%
    (단, 화장실 등 고객 편의시설 등은 시비 80%, 구비 20%)
  - 경영현대화 : 경영현대화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시장
    ▷ 부담비율 : 사업별, 지원횟수별 국비 지원 비율 차등
  -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 상인 자부담 확보가 곤란한 영세시장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
    ▷ 전기·소방 등 안전 관련 개선이 시급한 시장 최우선 지원, 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의지는 있으나, 자부담이 어려운 영세시장

지원신청

- 신청 기간 : 2020. 5월경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 2020. 1.~ 2020. 2, 2020. 7. ~ 2020. 8.
- 신청·접수기관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자치구·군 지역경제 업무부서

문의처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TEL 888-4742 FAX 888-4789
각 자치구·군 지역경제 업무부서

Ⅸ. 유관기관 지원시책

부산지방국세청

제1장 사업단계별 중소기업 지원내용[1)]

1 창업단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감면 (조특법§6)

구 분	지 원 내 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감면 (조특법 § 6)	• ’21.12.31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상시근로자 증가 시 최대 50% 추가 감면 ⇒ 최대 100% 감면) - ’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한 기업 중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과세연도는 감면기간 중 100% 감면 - ’18.5.29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 또는 신성장서비스업종 중소기업 :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 중소기업 감면대상

① ’21.12.31. 이전(이하 같음)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은 내국인(거주자와 내국법인)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감면대상업종으로 창업)

- 과세연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확인 받지 않는 내국인은 제외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하지 않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에너지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2019년 4월 기준의 세법 내용 및 제도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실지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사안별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배제

●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배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감면대상 사업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포함)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19.1.1 이후부터)은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중소기업 범위와 동일)
18. 물류산업(중소기업 범위와 동일)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중소기업 범위와 동일)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중소기업 범위와 동일)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중소기업 범위와 동일)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13.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16.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29. 통신판매업('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3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31. 이용 및 미용업('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서면2팀-610, '05.4.29.)

– 중소기업 중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감면업종으로 열거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 적용이 가능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

2 투자 및 자금조달단계

구 분	지 원 내 용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조특법§5)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또는 정보보호시스템 설비에 투자한 경우 – 해당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의 수도권 밖 투자 시 2%, 수도권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존권역 투자 시 1%)를 세액공제 * ' 15년 신규상장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4%를 세액공제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조특법§8)	•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기증 또는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 무상기증은 기증한 설비의 시가,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산입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특법§10의2)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 당해 과세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조특법§25①1호)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 해당 투자금액의 7%(일반기업 1%, 중견기업 3%)를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25①2호)	•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 투자금액의 7%(일반기업 1%, 중견기업 3%)를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25①3호)	•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오수처리시설,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감축시설 등에 투자한 경우 – 투자금액의 10%(일반기업 3%, 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25①4호)	•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어린이집에 투자하는 경우 – 투자금액의 10%(일반기업 3%, 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 – 직장어린이집 등은 취득금액은 10%를 세액공제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조특법§25①5호)	•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업무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해외자원 개발시설, 내진보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 투자금액의 10%(일반기업 1%, 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25①6호)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 투자금액의 7%(일반기업 1%, 중견기업 3%)를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25의4)	•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 투자금액의 6%(일반기업 1%, 중견기업 3%)를 세액공제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25의5)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사업화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 투자금액의 10%(일반기업 5%, 중견기업 7%)를 세액공제 – 다만, 중소기업은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인원 당 1천만원 차감
영상컨텐츠제작비용 세액공제 (조특법§25의6)	• 텔레비전이나 영화관에서 상영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 제작비용의 10%(일반기업 3%, 중견기업 7%)를 세액공제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특법§25의7)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 투자금액의 2~3% 세액공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 공제대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에 투자*한 경우
  * 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는 제외
· 공제세액 : 해당 투자금액의 3% ('15년 신규상장 중소기업은 4%)
  * (중견기업) '15년 신규상장 중견기업은 투자액의 4%
  수도권 밖 투자 시 2%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존권역 투자 시 1%

감면대상 기업

● 세법상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에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는 제외)하는 경우에 공제대상이 됨

감면대상 자산

● 사업용자산
-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아래의 자산을 말함
  ①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등 제외)
  ②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③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④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S) 소프트웨어

●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 상품을 판매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 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유통산업발전법 §2 12호)

●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
-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을 말하며(국가정보화기본법§3 6호),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감면세액 추징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임대한 경우,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소득세)로 납부

▌기타 시설투자 세액공제

감면대상

- 기본적으로 각종 시설 투자자가 해당 자산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 투자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투자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투자세액공제 불허
- 중고품과 금융리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3의2)외의 리스에 의한 투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자본적 지출 또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서 제외(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3)

공제시기

-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단,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

3 사업 영위단계

▌발생 소득·비용 등에 대한 지원

<table>
<tr><th>구 분</th><th>지 원 내 용</th></tr>
<tr><td>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7)</td><td>• 다음의 구분에 의해 소득세·법인세의 5~30% 감면
<table>
<tr><th colspan="2">업종</th><th>감면율</th></tr>
<tr><td rowspan="3">소기업</td><td>도·소매업, 의료업('도매업 등')</td><td>10%</td></tr>
<tr><td>수도권 안의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업종</td><td>20%</td></tr>
<tr><td>수도권 외의 지역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업종</td><td>30%</td></tr>
<tr><td rowspan="3">중기업</td><td>수도권 외의 지역 도매업 등</td><td>5%</td></tr>
<tr><td>수도권 안 지식기반산업</td><td>10%</td></tr>
<tr><td>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업종</td><td>15%</td></tr>
</table>
• 한도 : 1억원(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 시 1억원에서 감소인원 1명당 5백만원 차감)</td></tr>
<tr><td>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10)</td><td>•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세액공제액 = (1) + (2)
(1)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40%*
* 30% +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
(2) MAX (①,②)
①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한 금액의 50%
② 당해 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25%</td></tr>
<tr><td>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2)</td><td>• 특허권 등을 이전·취득·대여하는 경우
– 이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
– 취득금액의 10%를 세액공제('18.12.31 일몰종료)
– 대여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25%를 감면</td></tr>
<tr><td>최저한세 우대적용
(조특법§132①)</td><td>• 각종 감면을 받은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은 감면하지 않고 세금 납부
– 중소기업 7%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후 2년간 9%)
– 일반기업 :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
과세표준 100억원~1,000억원 이하 12%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17%</td></tr>
<tr><td>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법법§72)</td><td>•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과세한 법인세액 한도 내에서 환급</td></tr>
<tr><td>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85의 6)</td><td>•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그 후 2년은 법인세(소득세)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50% 세액감면</td></tr>
</table>

▌고용창출·유지 등에 대한 지원

<table>
<tr><th>구 분</th><th>지 원 내 용</th></tr>
<tr><td>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금 세액공제
(조특법§19)</td><td>• 성과공유 중고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금 × 10%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금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적용 배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중복 배제</td></tr>
<tr><td>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9의2)</td><td>• 복직 후 2년간 지급 인건비 × 30%
* '13.1.1.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하되, 공제율은 10%('18.1.1. 이후 30%)
** 중견기업은 '18.1.1. 이후 15% 세액공제 적용</td></tr>
<tr><td rowspan="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9의3)</td><td>• 재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 × 30%
* '15.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공제율은 10% ('18.1.1. 이후 30%)
** 중견기업은 '18.1.1. 이후 15% 세액공제 적용</td></tr>
<tr><td>•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인건비 × 10%
* 2019.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td></tr>
<tr><td rowspan="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9의4)</td><td>• 직전 3년간 임금증가율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td></tr>
<tr><td>•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의 합계 ×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적용</td></tr>
<tr><td>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9의7)</td><td>• 기업(소비성서비스업 영위 사업자를 제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
–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
(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중소(3년간)</th><th>중견(3년간)</th><th>대기업(2년간)</th></tr>
<tr><th>수도권</th><th>지방</th></tr>
<tr><td>상시근로자</td><td>700</td><td>770</td><td>450</td><td>-</td></tr>
<tr><td>청년 등</td><td>1,100</td><td>1,200</td><td>800</td><td>400</td></tr>
</table></td></tr>
<tr><td>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법§30의2)</td><td>• 중소기업이 '18.11.30.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1천만원(중견기업 7백만원)</td></tr>
<tr><td>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30의3)</td><td>•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 15% 세액공제</td></tr>
<tr><td>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30의4)</td><td>•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하여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이하 '청년 등') 순증인원 사회보험료의 100%
–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사회보험료의 50%(신성장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은 75%) 세액공제
• 일정한 중소기업이 '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사회보험에 신규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2년 적용)</td></tr>
</table>

▌중소기업 지방이전 등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60)	•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5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61)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당해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5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 산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63)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본점도 함께 이전해야 함) –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 다만,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수도권 연접지역·인구 30만 이상도시(조특령§60②)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 (조특법§63의2)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 또는 본사를 둔 법인이 공장 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본사이전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7년간 100%, 그 후 3년간은 50% 감면 *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수도권 연접지역·인구 30만 이상도시(조특령§60②)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4)	•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감면사업 소득에 대하여 5년간 50%를 감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85의7)	•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차익 상당금액을 3년 거치 후 3년 동안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85의8)	• 10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차익 상당금액을 2년 거치 후 2년 동안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121의17)	• 기업도시 개발구역 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 –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단계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31, 지특법 §57의2③)	• 통합 실설 법인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게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자산에 대해 이월과세(실제 처분 시까지 과세유예)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개발촉진지구 등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으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 통합하는 경우 잔존 감면기간을 승계하여 적용 •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해 통합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특법§32, 지특법§57의2④)	•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 • 법인전환에 따른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조특법§33)	•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영위하던 사업을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전환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액에 대해 3년 거치 3년간 분할 익금산입 • 거주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감면 받거나 과세 이연 –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산출세액×(취득가액÷양도가액)}×50% – 과세이연액 = 양도차익×(취득가액÷양도가액)
사업전환 중소기업, 무역조정지원 기업 세액감면 (조특법§33의2)	• 5년 이상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 – 사업 전환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 과세특례 (조특법§44)	•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법인 등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4년 거치 후 그 다음 3년간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46의2)	• 주식회사인 제휴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제휴법인의 주식을 '09.12.31. 이전에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고, –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당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벤처기업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47의3)	• 법인(벤처기업 포함)이 '12.12.31.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함에 있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기타 조세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접대비 손금 인정범위 확대 (법법§25①2) (조특법§136)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범위액 – 2,400만원 + 수입금액 × 적용율
중소기업 대손금 특례규정 (법령§19의2①9)	• 중소기업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 발생분)에 대하여도 대손처리 가능 * 일반법인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 할 수 없으며, 별도로 소멸시효 완성 등의 경우에만 대손처리 가능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특법§144①)	• 공제받을 세액 중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7년, R&D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납부 특례 (소득세법§128②)	• 직전 과세기간의 1월~12월까지의 매월말일 현재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자는 –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가능
법인세 분납기간 연장 (법법§64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일정기한 이내*에 분납가능 * 중소기업 2개월, 일반기업 1개월
전통주·민속주 제조업체 세율경감 (주세법§22③)	• 직전 연도 출고실적 500kl(증류수 250kl)이하 전통주 등 제조자에 대해 주세율 50% 경감

제2장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1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압류 및 납세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 사업상 위기 및 재해 등으로 인해 세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 납기연장·징수유예 최장 9개월, 체납처분 유예 최장 1년간 유예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중소기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대해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유예

● 납세유예 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납세담보 면제

- 납세담보 면제금액 기준

금액	유 형
5천만원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억원	① 생산적 중소기업 ② 5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 ③ 사회적 기업 ④ 장애인 표준사업장 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⑥ 재기 중소기업인 ⑦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 ⑧ 스타트업 기업 ⑨ 혁신중소기업
2억원	⑩ 2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⑩ 종합인증우수업체(관세청)
5억원	⑪ 모범납세자 (국세청장 이상 표창 3년간, 지방청장 이하 표창 2년간) ⑫ 세금포인트 (Min(사용가능 포인트×100,000원, 5억원))

▌사업용 자산,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유예

● 자금애로 중소기업 및 정부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사업용 자산이나 매출채권을 1년간 압류유예하여 계속적인 경영활동을 지원

▌재기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하여

- 1억원 한도 내에서 담보 없이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을 최대 3년간 유예

2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이나, 중소기업 등이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신고한 달 말일까지 지급

– 25일까지 신고 시 익월 10일까지 지급 → 20일까지 신고 시 당월 말일까지 지급

● 지원대상

· 모범납세자, 혁신중소기업 등

· 직전년도 과세분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면서 5년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

3 일자리창출 기업 정기조사 대상 선정 제외

●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금액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이 전년 보다 일자리를 일정비율*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 (수입금액 3백억원 미만) 2% 이상, (수입금액 3백억~1천억원 미만) 4% 이상

– 상세한 지원요건, 제출기간 등의 내용은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라는 제목으로 게시

4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한 간편조사, 사무실 조사 실시

●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이 짧고, 컨설팅 위주로 진행되는 '간편조사'를 실시

● 조사장소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의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기간의 대부분을 사업자의 사무실이 아닌 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무실 간이조사'를 실시

5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 지식이 부족하여 혼자서 세금 관련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임('14.3.3.부터 시행)

- 지원대상은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로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 다만,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는 제외

6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를 '16년 1월부터 제공

서비스	항목	기능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신용카드 등 사용액 미리 알려주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사전 제공, 공제항목별 절세팁과 유의사항,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추이 제공
	연말정산 결과예상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 스스로 예상세액을 간편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의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한 화면에서 손쉽게 모의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신고서 등 미리 채워주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자가 요건에 맞는 공제항목을 확인·선택하면 그 소득·세액공제액을 신고서·부속명세서에 자동 작성
간편 제출 서비스	근로자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온라인 제출
	회사	온라인으로 제출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지급명세서) 자동 작성 기능

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연말정산용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

- 서비스 항목('06년 귀속 8개 → '18년 귀속 14개) :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8 택시사업자 유류세 환급

● 택시업계의 경영 지원을 위해 택시에 충전하는 LPG부탄에 대하여 kg당 40원의 유류세를 환급

- 당초 '10.4.30. 일몰예정이었으나 지속적인 택시업계 경영 지원을 위해 '21.12.31. 까지 연장

9 모범납세자의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지방청장, 세무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는 국세청과 협약 체결된 10여개 금융회사로부터

- 표창수상일로부터 일정기간 대출금리 이자율 일정수준 인하, 각종 수수료 우대 등의 금융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음

*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내용에 따라 금융지원 대상 등 상이

10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운영

●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무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운영 중임

-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대로 세무처리를 한다면 추후 과세문제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세법해석과 관련된 세무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게 됨

11 「영세납세자 지원단」 설치 운영

●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세무·회계사*가 세금문제 해결을 돕는 제도

* 지식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 권익보호 등에 헌실할 세무대리인

- (창업자멘토링 서비스) 신규·예비 개인창업자 등에게 나눔세무·회계사(멘토)지정일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반 세무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세금문제 전반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생업에 바빠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하여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장애인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
- (폐업자멘토링 서비스) 폐업한 개인사업자 등에게 폐업일 이후 나눔세무·회계사(멘토) 지정일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12 법인 세금포인트 제도

●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부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14.3.1.일부터 개인에게만 부여하던 세금포인트 제도를 법인으로 확대·운영하여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을 제공

- (대상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 (대상세목 및 부여기간) '12.1.1.이후 납부한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의 신고·자납세액* 100,000원 당 세금포인트 1점을 부여

  * 신고·자납세액 : 환급 차감, 고지분 제외, 원천징수한 세액 포함

- (소멸) 세금포인트는 매년 2월에 최근 5년간의 납부실적으로 부여 하고, 6년 이전 납부실적은 소멸함
- (납세담보면제) 사용가능 포인트가 100점 이상이고, 징수유예·납기연장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 면제로 사용 가능

  * 면제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원(연간 5억원 한도)

- (승인요건)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 참조

- (신청세목) 고지를 받았거나 신고·자진납부 해야 할 모든 국세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국기법 제39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국기법 제40조) 등 본래의 세금포인트 소유자의 세금이 아닌 것은 제외

13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

● 상속·증여세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 발간·배포

- 가업승계 세정지원팀 및 가업승계 상담창구 등을 운영하여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14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으로 영세납세자 지원

●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 중

-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규정과 현장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강의함으로써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

* 지역별 납세자세법교실 운영, 세목별 신고실무, 원천징수실무, 수정신고 및 조세불복,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CEO를 위한 가업승계제도, 창업기업과 세무 등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강좌 개설

* 참가신청 :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일 2주~3주 전부터 온라인으로 접수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고용센터)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운영목적

- 임신, 육아, 자기계발, 가족돌봄, 건강, 퇴직준비 등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제도

지원요건

- △전환제도(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마련) 도입 △전일제 근로자(6개월 이상 고용)의 자발적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근무 △전환기간이 최소 2주 이상 △전자적·기계적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지원내용 ▷ 임금감소액보전금 · 간접노무비 등 최대 1년간 지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보다 사업주가 더 많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더 준 임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 : 월 최고 40만원
  - 주 25시간 초과 35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 : 월 최고 24만원
  - (임신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 : 월 최고 40만원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지원기간동안 월 20만원 지원
- 대체인력인건비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월 60만원(대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

문의처 : 전국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TEL 1350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목적

● 현재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 노동자의 계속 고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0인 이상인 기업은 전체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20%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

지원내용

● 정년에 도달한 재직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면 비용 지원

〈비용 지원이 되는 계속고용제도〉

정년 연장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 정년보다 **정년을 연장(1년 이상)**하는 것
정년 폐지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을 폐지**하는 것
계속 고용 (재고용)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행 **정년은 유지 하지만,**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 등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는 것

● 지원수준: 기업별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노동자 1인당 90만원(월3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계속고용제도 시행	⇨	지원금 지급 신청 (분기) 및 요건 확인	⇨	확인 및 검토, 지원금 지급
사업주		사업주·고용센터		고용센터→사업주

문의처 : 전국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TEL 1350

3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고용율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

  ▷ 제 외 : 지원금 신청 전 3개월부터 신청 후 6월간 근로자를 고용 조정한 경우(만55세 이상자에 한함)

- 지원금액 및 기간 : 1인당 분기 30만원(우선지원기업은 근로자수의 20%, 대규모기업은 근로자수의 10%한도)

문의처 : 전국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TEL 1350

4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운영목적

● 정규직 고용관행이 확산되도록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부담은 덜고, 비정규직근로자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와주는 제도

지원대상

●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제외

지원요건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2년 미만 계속근로 중인 기간제, 파견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아래 근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① 최저임금 이상, ②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③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참여신청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을 이행해야 함

지원내용

● 임금상승액 보전지원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급

● 간접노무비 지원
-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기간 동안 월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제출

문의처 : 전국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TEL 1350

5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

- 경기불황, 경영사정 악화,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사업규모 축소·조정, 원자재 부족, 생산물량 감축, 판매부진·재고누적 등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휴직(유급)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

고용유지 조치의 종류와 지원내역

종류	지 원 요 건	지 원 금 액
휴업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 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 근로시간보다 20/100 초과하여 감소하는 경우 ※ 기준기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휴직	• 복직을 전제로 1개월이상 휴직을 실시한 사업주	유급 : 휴직수당의 2/3(대규모 1/2)

지원기간 및 한도액

-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휴직(유급)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그 실시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년도 중 180일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한도 : 근로자 1인 일일 상한액 66천원

지급절차

-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 조치계획신고서”를 실시 1일전까지 1개월 단위로 반드시 제출
- 계획의 변경 시 변경 1일전까지 계획변경신고서 제출(계획 변경 신고치 아니한 경우 해당 달의 지원금 부지급)
- 고용유지 조치기간 및 이후 1개월까지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감원이 있거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지원이 되지 않음

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 지원요건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해당 근로자 업무 복위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육아휴직을 허용한 피보험자 1명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 지원 제외)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피보험자 1명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 월 1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2년 범위

※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1개월분 지원금 지급, 나머지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요건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감원방지의무를 지킨 사업주

※ 감원방지의무 :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대체인력 1명당 월 8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육아휴직 등 부여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1년 범위내에서 지원

문의처 : 전국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TEL 1350

7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이거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이면서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상태로 1개월 이상 경과한 자를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제외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자
- 대규모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인 대졸 실업자 중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자를 고용한 경우
- 신규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
- 사업주가 해당근로자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고용보험 미 가입 및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2조 중증장애인 제외)을 새로 고용한 경우 지원제외(신설)

※ 지원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인정 요건

연번	명 칭 (주관부처 및 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1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Ⅰ유형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Ⅱ유형(중·장년층)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Ⅱ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

연번	명 칭 (주관부처 및 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법무부)	–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으나 3단계를 마친 사람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10	[기본교육], [취업워크숍] (국방부, 국가보훈처)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12	일반고 특화훈련 (고용노동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으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13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총 12개월간 지원

구분	연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 임금의 80%를 지원한도로 설정

-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후에 지원금 신청가능
- 직전년도말 기준 피보험자의 30%에서 지원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의 합을 제외한 인원 한도로 지원

문의처 : 전국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TEL 1350

8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요

●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지원 대상

● 청년

▷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이하' 신규 취업자
(단, 2년형에 한해 고보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실시기업 및 참여자 기타 자격요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정한 바에 따름

지원 내용

● 지원방식: 2~3년간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기업적립금은 **정부지원금 중 일부를 적립** (기업부담 없음)

2년형	청년 300만원(월 12.5천원) + 정부 900만원 + 기업 400만원**<정부지원 450만원>** ☞ **2년간 총 1,600만원 + ∝**
3년형	청년 600만원(월 16.5천원) + 정부 1,800만원 + 기업 600만원**<정부지원 670만원>** ☞ **3년간 총 3,000만원 + ∝**

신청 절차

●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www.work.go.kr/youngtomorrow] 또는 위탁운영기관에 신청

문의처 : 부산고용센터 취업지원과 직업진로지도팀 TEL 860-2020,1981~4 FAX 719-4507

9 외국인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란?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07.1월부터 산업연수제 폐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1. 내국인 구인신청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 신청
   - 14일간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
   - 인터넷 구인신청(팩스신청가능)
     www.work.go.kr '기업서비스 로그인'
     구인정보관리 ⇨ 구인신청 ⇨ 등록 ⇨ 인증

⋙

2. 외국인 구인신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담당자 신청
   - 직접방문 (최초 직접방문, 이후 팩스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사업장등록증사본 등

⋙

3. 외국인근로자알선 및 고용허가서발급
   - 사용자는 지역협력과 추천자 중 적격자 직접 선정
     – www.eps.go.kr '국내용 로그인' ⇨ 사업주서비스 ⇨ 알선현황 조회 ⇨ 추천 외국인근로자 명단확인 및 선택
   - 사용자가 추천외국인 구직자중 적격자 선정하는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

4. 근로계약체결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사용자가 선정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체결 및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계약체결 위탁도입(위탁도입비 사업주부담) (한국산업인력공단 051-620-1938)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무대행(대행비사업주부담) (T.051-861-9365)

⋙

5. 입국 및 취업교육,사업장 인도(신규 외국인력인 경우에 한함)
   -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일정기간 내 취업교육 이수 후 사업장 인도
     ※ 취업교육비 사업주부담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등록

외국인력 도입가능 국가

-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 키르키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외국인력 허용업종

- 제 조 업 :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건 설 업 : 모든 건설공사(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업체 제외)
- 서비스업 : 냉장·냉동창고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어 업 :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제조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1명 이상 5명 이하	5명 이하
6명 이상 10명 이하	7명 이하
11명 이상 30명 이하	10명 이하
31명 이상 50명 이하	12명 이하
51명 이상 100명 이하	15명 이하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이하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이하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 건설업, 서비스, 어업, 농축산업 별도

※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신청 전일 기준 3개월 평균)로 판단

외국인 고용가능 사업장 자격요건

-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가능사업(장) 해당
-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 고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경우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자진 귀국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우대방안

-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고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귀국 3개월이 지난 후에 재입국하여 귀국 전에 근무하던 사업장에 다시 취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적용 대상자 : 재고용되어 근무하다 '12.7.2. 이후 취업 기간이 만료되는 자로서 사업장 변경 사실이 없을 것

  ※ 대상 사업장 : 농축산업·어업·제조업 100명 미만('19.1.1.이후 취업활동기간 만료시, '19.1.1.이전 제조업 50인 이하)

- 특별한국어시험 제도 : 재고용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 귀국하여 송출국에서 실시하는 특별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귀국 6개월 경과 후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는 제도 (2017년 잠정 중단, 2018년 이후 재개)

  ※ 적용 대상자 :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다 취업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귀국한자('10.1.1. 이후 귀국자에 한함)

  ※ 대상 사업장 : 합격자가 1년 이상 근무한 최종 사업장

문의처 : 부산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TEL 860-1929~30 FAX 719-4510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TEL 861-9373 FAX 637-2066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1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스마트, 자동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 중소 제조현장 혁신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시행시기 : 2020. 3월중 공고(중소기업중앙회)
- 사 업 비 : 200억원(정부 100억원, 삼성전자 100억원)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지원내용

- 유형별 지원내용

유형		지원대상	기업당 지원금액	지원규모	비고
유형 1	A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	최대 1억원	50社 내외	정부·대기업 : 참여기업 6 : 4 매칭
	B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최대 6천만원	150社 내외	
유형 2	C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소공인, 취약지역/업종 등	최대 2천만원	300社 내외	정부·대기업 지원 100%

① 모집기간 : 수시모집(예산 소진시까지)

② 상기 3개 유형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

③ 최대 지원금액 초과분은 참여기업 부담

※ 상기내용은 2019년 사업추진 내용이며 2020년 사업 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

● 구축내용

○ 유형 1-A(중간1 수준 이상), 1-B(기초 수준 이상)

- 제조현장 혁신(제조혁신 마인드 제고, 5S3정 등)
- 운영시스템 구축(MES, ERP, SCM, PLM 등)

○ 유형2(C형)

- 제조현장 혁신 및 환경안전 개선
- 간이 생산시스템, 간이 자동화 및 환경안전시스템 구축

신청방법 및 절차

● 지원절차

①사업공고, 사업의향서 이메일 접수	→	②상담(유선/방문)	→	③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사업등록시스템)	→	④종합평가, 원가감리 진행, 선정기술위원회
중앙회(지역본부)		삼성전자		중앙회(지역본부)		중앙회(지역본부) 삼성전자

↓

⑤선정·협약 사업착수	←	⑥중간점검	←	⑦최종점검, 심사평가, 완료기술위원회	←	⑧최종완료, 지원금 지급
중앙회(지역본부) 참여기업, 공급기업		중앙회(지역본부) 삼성전자		중앙회(지역본부) 삼성전자 참여기업, 공급기업		중앙회 삼성전자

* 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 : 삼성전자 소속 전문인력(멘토)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TEL 861-9372 FAX 637-2066

2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지원

추진목적

●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조합을 조직함으로써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협동사업 수행을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

협동조합 설립요건

종 류	업 무 구 역	법정최저발기인수	법정최저출 자 금
협동조합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지방조합)	50인 이상 *도·소매업종 70인 이상	4천만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일정지역(지방조합)	30인 이상 *도·소매업종 50인 이상	4천만원
사 업 협동조합 (다른업종)	2이상의 광역시·도	(시·도) 50인 이상 *도·소매업종 70인 이상	4천만원
	하나의 특별시·도 또는 일정지역	(시·도) 30인 이상 *도·소매업종 50인 이상	4천만원
사 업 협동조합 (동일업종)	하나 또는 2이상의 시·군·구 또는 일정지역 *동일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또는 특별시·광역시·도를 업무구역으로 못함	5인 이상	4천만원

협동조합 설립절차

● 협동조합 설립 사전협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 발기인 모임
- 설립취지서 작성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작성
- 정관(안) 작성
- 기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자료 작성

● 창립총회 공고
- 회의일시, 장소 등을 공고 ▷ 공고일과 개최일을 제외하고 2주간 이상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취지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의결
- 정관, 임원선임, 기타 안건 의결

● 주무관청에 인가신청
- 설립취지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정관 등 10종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 신청(창립총회 후 4주 이내)

● 주무관청 → 중소기업중앙회에 의견문의
- 영위업종, 업무구역, 다른 조합과의 업종중복 등 검토
-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종합검토

● 설립인가
- 특별시·광역시·도지사 인가
- 조합 설립인가 시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

● 설립등기 및 신고
- 2주내에 발기인대표와 이사장간 업무 인계인수
- 사무인계인수 후 3주내 출자금 납입
- 민법 제49조에 의거 설립등기
- 인가관청에 설립신고

● 조합업무 개시 및 회원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회원가입

협동조합 설립효과

● 공동사업수행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증진
● 중소기업의 경영합리화 촉진
● 정부시책에의 의사 반영 및 수혜 용이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의 정보제공과 지도·교육·연수 사업을 통한 의식향상에 기여
●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정 등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TEL 861-9374 FAX 637-2066

3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추진목적

-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도, 재해, 사망 등으로 폐업할 경우 사업재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금을 적립하는 공제 사업

가입대상

-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한 소기업 · 소상공인, 무등록 소상공인(인적용역제공자에 한함)

연 최대 500만원 별도 소득공제로 최적의 세테크

- 공제 납부 부금액에 대해서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별도로 연 200만원 ~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채권자의 압류에서 보호되는 안전한 자금

- 압류, 양도, 담보 금지로 폐업 등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자금 확보 가능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2년)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장해 발생시 월 부금액의 150배 이내의 보험금 지급

공제금 지급사유

- 사업폐지 · 사망 · 퇴직 : 가입자의 폐업 또는 사망, 법인대표의 질병 · 부상에 의한 퇴임시
- 노령(老齡) :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공제부금 종류

- 월 5만원 이상 100만원(1만원 단위)

부산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사업장이 부산시에 소재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신규가입 소상공인(월 1만원, 1년)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TEL 861-9376 FAX 637-2066

4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추진목적

-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부금과 정부의 출연금으로 '84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받은어음(가계수표) 부도 또는 자금화가 지연되거나 단기운영자금이 필요시 융자 지원하는 제도임

공제기금 가입대상

-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전 업종
- 주점업, 도박장 운영업 등 극히 일부 업종은 가입 제한

※ 중소기업협동조합도 가입 허용

공제기금 가입절차

- 가입방법 :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 체결(방문 및 FAX 가능)
- 가입 신청서류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청약서(본회 소정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월부금 종류

- 10만원 단위로 10종 : 10만원 ~ 100만원
- 기타 3종 :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월부금 만기

- 월부금 만기 : 20개월 또는 34개월(300만원), 30개월 또는 50개월(200만원), 40개월(150만원), 42개월 또는 60개월(10만원 ~ 100만원)
- 만기부금 이자 : 부금만기 후 매 3개월 마다 소정의 장려금 지급

공제기금 해지

- 가입 후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해지시 부금납입 회차가 12회 이상인 공제 계약자에게 부금 잔액에 일정액의 해지이자를 더하여 해지환급금 지급

대출 자격 : 공제기금 가입후 3개월(4회차) 이상 부금 납부한 자

대출 종류

● 부도어음 대출

- 대출대상 :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상거래에서 받은 어음의 부도 및 외상매출채권의 회수곤란으로 도산의 우려가 있을 때
- 대출한도 : 부금잔액의 10배 이내(담보 제공시)
- 대출이율 : 무이자(단, 대출금의 1/10을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
- 대출기간 : 3년(6개월 거치후 30개월 분할상환)
- 대출조건 : 무담보, 무보증

● 어음·가계수표 대출

- 대출대상 : 상거래에서 수취한 받은어음 및 당좌수표(가계수표 포함)의 현금화 지연으로 도산의 우려가 있을 때
- 대출한도 : 부금잔액의 7배 이내(담보제공시)
- 대출이율 : 연 3.5% ~ 8.38%
  (부금잔액 초과대출금에 한하여 대손보전준비금 연1% 별도 부과)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대출조건 : 대출한도에 따라 담보제공
  ※ 무보증 한도 : 납입부금의 최대 7배 이내

● 단기운영자금 대출

- 대출대상 :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도산의 우려가 있을 때
- 대출한도 : 부금잔액의 10배 이내(담보 제공시)
- 대출이율 : 연 3.5% ~ 9.63%
- 대출기간 : 1년 이내
- 대출조건 : 대출한도에 따라 담보제공
  ※ 무보증 한도 : 납입부금의 최대 3배 이내

대출이자 이차 보전(2호, 3호 대출시 : 1 ~ 2% 지원)

● 공제사업기금 이용업체가 납부하는 대출이자의 일정부분을 부산광역시 자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영세 대출업체의 금리부담 경감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TEL 861-9376 FAX 637-2066

5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 도입 지원

추진목적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기업의 번거로운 고용절차, 어려운 취업교육, 고용·체류관리 등 모든 업무를 일괄 대행함

외국인근로자 고용 안내

- 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및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기업
- 대상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네팔, 동티모르, 중국,
  라오스
- 고용신청서류
  -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청 절차

- 내국인 구인신청(노동부 워크넷) → 고용허가서 신청 → 근로계약체결 → 사증 발급 인정서 발급 신청 → 입국 및 취업교육 → 중소기업 인수인도

고용대행수수료

- 필수비용(3년) : 341,000원(입국 전 후 행정대행, 취업교육)
- 선택비용(3년) : 76,000원(통·번역, 정보제공 등 편의제공)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

상시근로자수	허용인원	상시근로자수	허용인원
5인 이하	5명 이내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명 이내
6인 이상 10인 이하	7명 이내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명 이내
11인 이상 30인 이하	10명 이내	150인 이상 200인이하	25명 이내
31인 이상 50인 이하	12명 이내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명 이내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TEL 861-9375 FAX 637-2066

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 판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내용

목 적	제 도 의 종 류
중소기업 수주 확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제도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 간 과당경쟁 방지	•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 직접생산 확인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유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 • 중소기업제품 성능보험 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운영

·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입찰정보, 구매담당부서 등 정보제공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해당제품 생산정보, 신용평가 등 재무정보, 기술 및 품질인증 정보 등 제공

●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국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 / 유효기간 : 2년

● 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운영

· 5천만원 이하 中企간 경쟁제품 계약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아 수의계약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 중소기업협동조합과 3개 이상 제조 소기업이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① 해당업체간 제한경쟁 가능

② 협동조합에 업체 추천 이후 추천업체 간 지명경쟁 가능

● 공공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홍보 및 교육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지원제도 운영현황 및 구매실태 조사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TEL 861-9372 FAX 637-2066

7 중소기업 손해공제(파란우산공제)

추진목적

- 중소기업이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위험에 대비하도록 화재·배상책임 등 공제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경영부담 완화
- 인수거절 최소화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사업 및 생계기반 보장 성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수출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특징

- 중소기업 비용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공제료(시장가 대비 10~25% 저렴)
- 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한 가입 확대로 보험가입제한 최소화
- 체계적인 보상서비스의 정확성 및 신속성

가입대상

구 분	내 용
화재공제	○ 상가, 공장 등의 피보험자의 재산
재산종합공제	○ 건물, 기계장치, 공기구 등 피공제자의 모든 재산
영업배상 책임공제	○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각종 비용손해

취급종목

구 분	내 용
화재공제	○ 공장 및 일반 물건 등에 대한 화재위험 보장
재산종합공제	○ 화재와 같은 개별위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재물 손해, 기계적 손해 및 조업중단 등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 보장
영업배상 책임공제	○ 영업상 발생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 보상

보상하는 손해

구 분	내 용
화재공제	○ 직접손해 – 화재손해 : 직접적으로 불에 타거나 벼락에 맞아 생긴 손해 – 소방손해 : 화재진압과정에 관련하여 생긴 수침 손이나 파괴 손 – 피난손해 : 최초사고로부터 5일이내 생긴 피난지 내에서의 화재 ○ 잔존물 제거 비용 ○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재산종합공제	제1부문 (재산손해) ○ 위험 : 화재 및 기타위험 ○ 담보내용 – 화재, 낙뢰, 폭발, 풍수재, 연기, 지진 등에 따른 재산손해 – 특별약관(선택형) : 소규모공사, 추가재산 확장담보, 일시적 철거위험 확장담보, 특별비용 특약 등 제2부문 (기계손해) ○ 위험 : 공장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돌발사고로 기계에 입은 손해 ○ 담보내용 – 기계적인 사고 (주조 또는 재질의 결함, 설계제작 또는 조립의 결함) – 전기적인 사고 (과부하, 단락 등) – 종업원 부주의, 기술부족, 추락, 이물질의 유입에 의한 고장 등 제3부문 (기업휴지손해) ○ 위험 : 제1,2부문에 따르는 총이익 상실 ○ 담보내용 – 제1,2부문에서 보상하는 물적손해로 인해 조업이 중단(휴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담보 매출액 감소로 인한 총이익 상실액과 특별비용 담보 제4부문 (배상책임손해) ○ 위험 : 법률상 배상책임 위험 ○ 담보내용 – 제3자에 대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기타 손해 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법률 비용 등
영업배상 책임공제	○ 고객 및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보상 – 피공제자가 영위하는 영업행위 중 고객을 포함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 ○ 소송대행 및 제반비용 보상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소송업무대행과 제반 법률비용, 응급처지비용, 중재비용 등 보상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TEL 861-9373 FAX 637-2066

8 기업보증공제

추진목적

●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

보증대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요기관에 납품하는 모든 중소기업

보증상품

● 조달계약(물품, 용역)관련 입찰, 계약, 하자보수 이행보증 및 선급금지급보증 취급

보증요율

● 계약자별 신용등급 및 기타 변수들을 기초로 보증요율 책정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할인, 부금가입자 할인 등 할인제도를 마련하여 기존에 부담하던 보증료를 대폭 인하(민간보증보험사의 기본보증요율의 45%~75% 수준)

이용방법

● 중소기업보증공제 홈페이지 방문 및 전화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본부, 지부) 방문·약정 ▷ 청약(인터넷 또는 방문)
▷ 보증서 발급(전자보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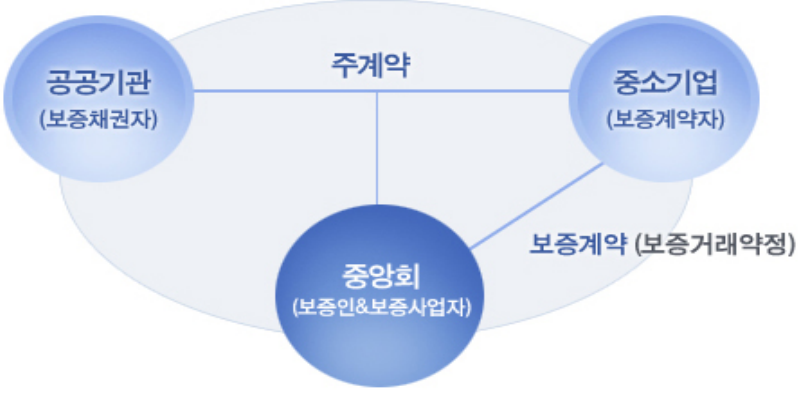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TEL 861-9373 FAX 637-2066

9 제조물책임(PL)단체보험

추진목적

-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공제는 「생산물 배상책임(PL) 보험」과 같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인적, 물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제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제도임

특징

- 정부(중소기업청)에서 마련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 일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대비 20~30% 저렴한 보험료
- 클레임처리의 편리성·신속성, 특히 해외 클레임처리의 안정성

가입대상 제조물

-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성품 등

가입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완성품제조업체는 물론, 원재료나 부품 제조업체, OEM업체, 수입 및 판매업체

공제료(보험료)의 산출

- 가입유형(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제품종류, 판매지역(국내, 해외) 매출액 등에 따라 달리 결정

가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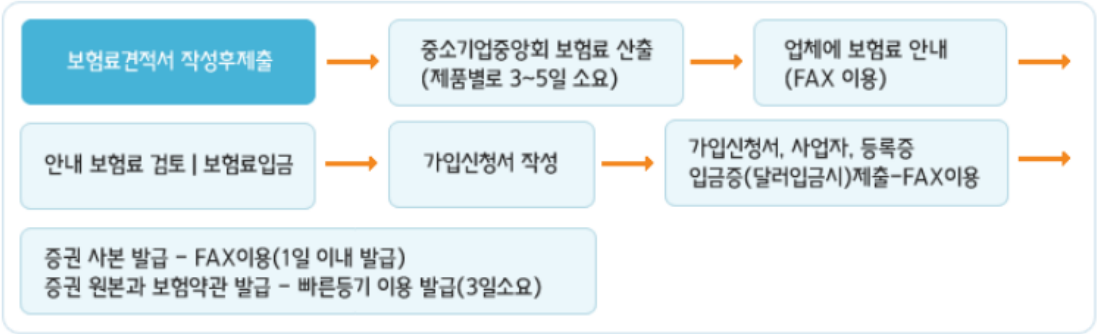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TEL 861-9373 FAX 637-2066

10 가업승계지원센터 운영

추진목적

-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명품 장수기업'으로 육성

지원전략

주요사업

- 가업승계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 가업승계 제도개선
- 가업승계 정보제공, 설명회, 교육, 상담 지원
- 명문 장수기업 포상
-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선진제도 발굴
- 경영후계자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 가업승계 1.2세대 소통 원활화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TEL 861-9374 FAX 637-2066

11 일사천리 사업

사업목적

* 一瀉千里 사업이란 ? 우수 지역상품을 홈쇼핑 방송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린다는 의미

-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 TV 홈쇼핑을 활용한 판매 및 홍보 등 판매망 개척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도모
- 부산지역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홈쇼핑 방송 추진

지원대상

- 부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제조업)

지원규모

- 입점수수료 지원 : 2,200만원(중소기업중앙회 12백만원 + 부산시비 10백만원)
  * 선정업체는 판매직접비(카드관련, 전화주문 비용 등) 부담

입점업체 선정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 사업공고 · 부산울산지역본부 및 부산경제진흥원 접수	1월 중
▼		
서류심사 (1차)	· 홈앤쇼핑 심사	2월 중
▼		
MD상담회 (2차)	· 홈앤쇼핑(MD) 1차 선정업체 대상 상담	3월 중
▼		
선정위원회 (3차)	· 업체 심사 ⇒ 고득점순 5개 선정	3월 중
▼		
선정결과 공고	· 중소기업중앙회 및 부산경제진흥원 선정 결과 통보	4월 중
▼		
방송판매	· 방송 입점 진행 · 11월말까지 방송 완료	4월~ 11월말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TEL 861-9372 FAX 637-206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지원개요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시 융자대상 및 절차, 융자제한 기업, 융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지원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융자한도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소재 · 부품(별표5) 영위기업 및 혁신형기업(별표11), ② 협동화 ·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③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④ 미

래기술육성자금, ⑤ 고성장촉진자금, ⑥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자금, ⑦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⑧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⑩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⑪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 ⑫ 브랜드 K 인증기업, ⑬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⑭ 글로벌 강소기업, ⑮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⑯ 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⑰ 고용부 인증 시간 선택제 우수기업, ⑱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⑲ 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 ⑳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㉑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㉒ 공정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기업, ㉓ 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 ㉔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 ㉕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업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자금종류별 대출금리(사업별 기준금리)는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시설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3%p 차감
● 사회적경제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1%p 차감
● 고용창출기업 : 고용창출 1인당 0.2%p 이자환급
– 정책자금 대출월포함 3개월 이내 1인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수출 성과기업 : 1년간 0.3%p 이자환급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기업

구분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수출성공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수출향상	-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이자환급(고용·수출)은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 이내 지원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은 취급수수료(1.0%)를 차감 후 지원)
※고정금리 적용기업은 이자환급 신청 불가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융자절차

● 융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예약 단계 생략가능

- **(온라인신청 예약)**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자가진단' 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혁신성장,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지역성과창출)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융자대상 결정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성공패키지 포함)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중 일정금액 이상 시설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투자 타당성 평가 가능

○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대출 및 사후관리

● **(대출)**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대출금을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

(대상자금 : 창업기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中 운전자금)

< 기업자율 상환제도 >

●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

*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예시) 대출 이후 1~3년차에 원금의 15%, 4년차에 대출원금의 15%, 5년차에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기한 내 자율적으로 상환)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상환비율			15%	15%	70%
상환금액*			7.5백만원	7.5백만원	35백만원

* 대출금액 50백만원을 가정한 상환금액

○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
-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은 적용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 업력 5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전략산업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⑨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⑫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투융자복합금융은 산정 예외)

⑬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⑭ 최근 5년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재해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등은 실적산정 및 신규 지원 시 예외

※ 융자제한 사유(⑦, ⑨항)에 해당하더라도, 신기술인증기업(NEP·NET) 등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기술사업성 예비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를 거쳐 융자지원 가능

※ 기타 융자제한기업 항목(①~⑭)별 적용예외는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융자시기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부산지역본부 · 부산동부지부 관할지역 안내

● 부산지역본부 :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 부산동부지부 :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 각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부에 신청 및 문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TEL 051-630-743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동부지부 TEL 051-745-5925

정책자금 융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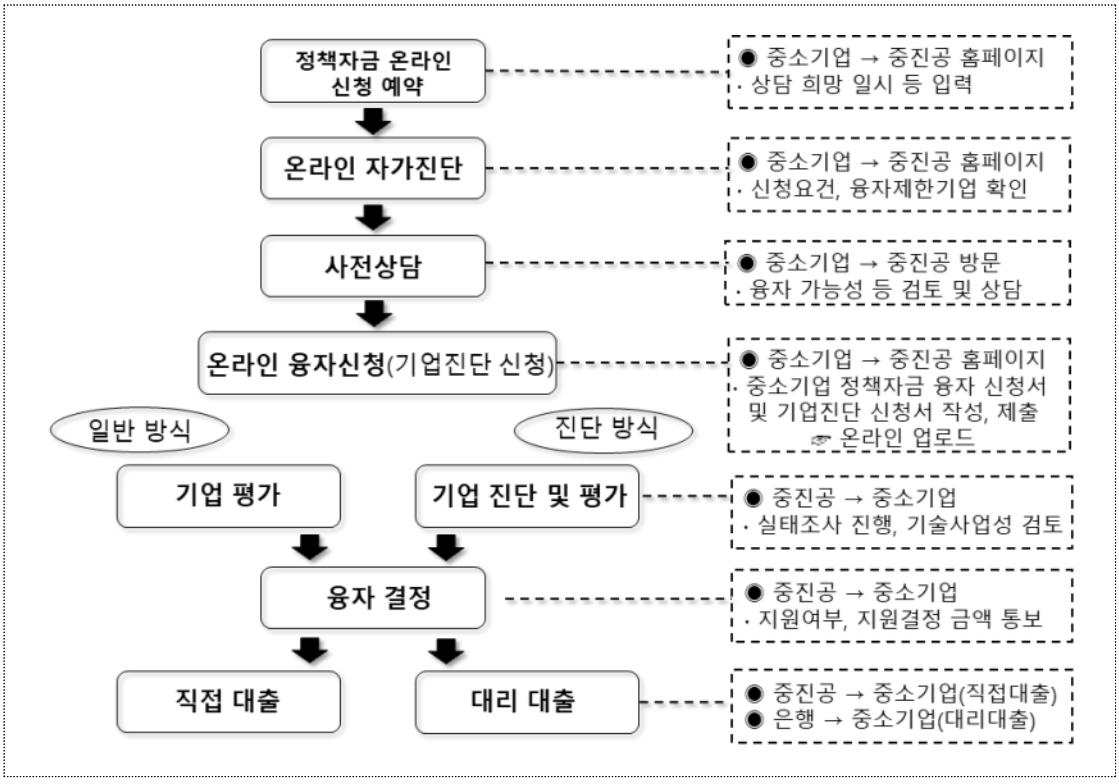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예약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상담 희망 일시 등 입력
온라인 자가진단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신청요건, 융자제한기업 확인
사전상담
● 중소기업 → 중진공 방문
· 융자 가능성 등 검토 및 상담
온라인 융자신청(기업진단 신청)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및 기업진단 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업로드
일반 방식
진단 방식
기업 평가
기업 진단 및 평가
● 중진공 → 중소기업
· 실태조사 진행, 기술사업성 검토
융자 결정
● 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여부, 지원결정 금액 통보
직접 대출
대리 대출
●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 은행 → 중소기업(대리대출)

2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사업목적

○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융자규모 : 25,500억원

신청대상

○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으로 구분

□ 창업기반지원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별도 운용

< 청년전용창업자금 >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
▪ 창업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대표자가 대기업, 중견기업, 정부출연연구소 은퇴자(예정) 또는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일자리창출촉진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인재 육성 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

기업,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 일자리 유지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좋은일자리 강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 인재육성 :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 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미래기술육성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분야(별표3) 영위기업

□ 고성장촉진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10년 미만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이상(신청·접수 전월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고성장·혁신기업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지방 소재기업은 15%)
- 3년 연속 고용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수출 연평균 10% 이상 증가기업(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 경영혁신형 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신기술(NET·NEP) 인증기업, 정부 창업양성사업(TIPS,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성장성(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증가) 우수 기업

□ 개발기술사업화

○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은 지원 불가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다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 디자인 개발,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제외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2%차감(단, 업력 7년이상 10년미만 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투자자금은 7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투자자금 연간 2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기업당 1억원 이내(단 제조업은 2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대출한도는 30억원 이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②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③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 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⑤ 여성기업, ⑥ TIPS성공 졸업기업, ⑦ 미래기술육성자금, ⑧ 고성장촉진자금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

3 투융자복합금융

사업목적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융자규모 : 2,000억원

신청대상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직접금융 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성장공유형(스케일업금융)의 융자대상, 융자조건, 융자방식 및 지원절차 등은 별도 공고에 따름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토지, 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 **성장공유형 대출** (대출방식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성장공유형 대출** (대출방식 : 상환전환우선주 인수)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상환조건 :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금리는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경과 후부터 가능

4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융자규모 : 2,000억원

신청대상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으로 구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미만)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스타트업 : 해외진출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 참여한 업력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중소기업
- 온라인 수출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참여기업
- 브랜드K 인증기업 : 정부가 혁신기술 기반의 “소비재 우수 제품” 제조기업으로 인증한 대한민국 중소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수출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10만불 미만의 수출이 있는 기업

□ 수출기업 글로벌화

○ 수출 유망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이상)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융자범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토지, 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융자조건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스타트업은 한도거래(만기 3년) 방식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

* 스타트업의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수출기업 글로벌화**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단, 브랜드K 인증기업의 대출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5 신성장기반자금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융자규모 : 13,300억원

신청대상

○ 혁신성장지원(협동화, 산업경쟁력강화 포함),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

□ **혁신성장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사업승계, 법인전환 등으로 업력 7년 미만이나,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혁신성장지원자금으로 융자

○ 다음 협동화자금과 산업경쟁력강화자금 별도 운용

< 협동화 >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 제한 없음)
< 산업경쟁력강화 >
▪ 업력 7년 이상의 한중FTA 취약업종(별표15) 영위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 국내 복귀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⑦항 적용 제외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 자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이내)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단, '산업경쟁력강화',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임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②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③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⑤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⑥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6 재도약지원자금

사업목적

○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융자규모 : 2,100억원

신청대상

○ 사업전환(무역조정, 사업재편 포함),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 구분

□ **사업전환**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별표12 참조)

* 융자 신청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한·중 FTA 관련업종(별표15)의 사업전환 지원 포함

< 사업전환승인 기본요건 >

•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별표1) 업종 제외)

* 「서비스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어업, 입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등 세부요건은 별표 12 참조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⑨항 적용 제외

○ 다음 무역조정 및 사업재편 자금 별도 운용

< 무역조정 >

▪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별표13 참조)

* 융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서비스업 중 무역조정지원 대상 업종 : 별표14
*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⑥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

< 사업재편 >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융자 신청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①항(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⑥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

□ 구조개선전용

○ 다음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 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
(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 포함)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단기적 자금애로 등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국세 물납 법인

□ 재창업

○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변제계획인가(개인회생), 파산면책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의 경우 등을 통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할 것.(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영업실적 보유요건 면제)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인 자
  * 설립 7년 미만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③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④「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다음 기술혁신형재창업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별도 운용

< 기술혁신형재창업 >
-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또는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
- 재도전 Fund를 투자 받은 재창업자
-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 예정인 자
- 혁신성장분야(별표3) 업종 영위자
- 소재·부품 산업(별표5) 업종 영위자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 신용미회복자로 중진공, 신보, 기보 등이 기업평가 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 및 융자결정(모든 채무가 조정되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에 한함)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융자가능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사업전환자금 시설자금 담보대출은 거치기간 5년 이내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구조개선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의 대출한도는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기업당 5억원 이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②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③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사업전환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구조개선전용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직접대출

- (융자상환금조정형)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및 사업전환자금(개인사업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가능

7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목적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융자규모 : 1,000억원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융자범위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재해 피해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①, ⑦항 적용을 예외로 하며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⑦항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은 ①, ⑥항 추가 예외

*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5),일본수출규제관련 피해, 고용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對이란 제재 피해, 화학안전 법령 이행,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한국GM(군산·창원 공장) 협력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 對이란제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융자조건 및 방식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규정 등을 따릅니다.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TEL 051-630-743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동부지부 TEL 051-745-5925

8 수출마케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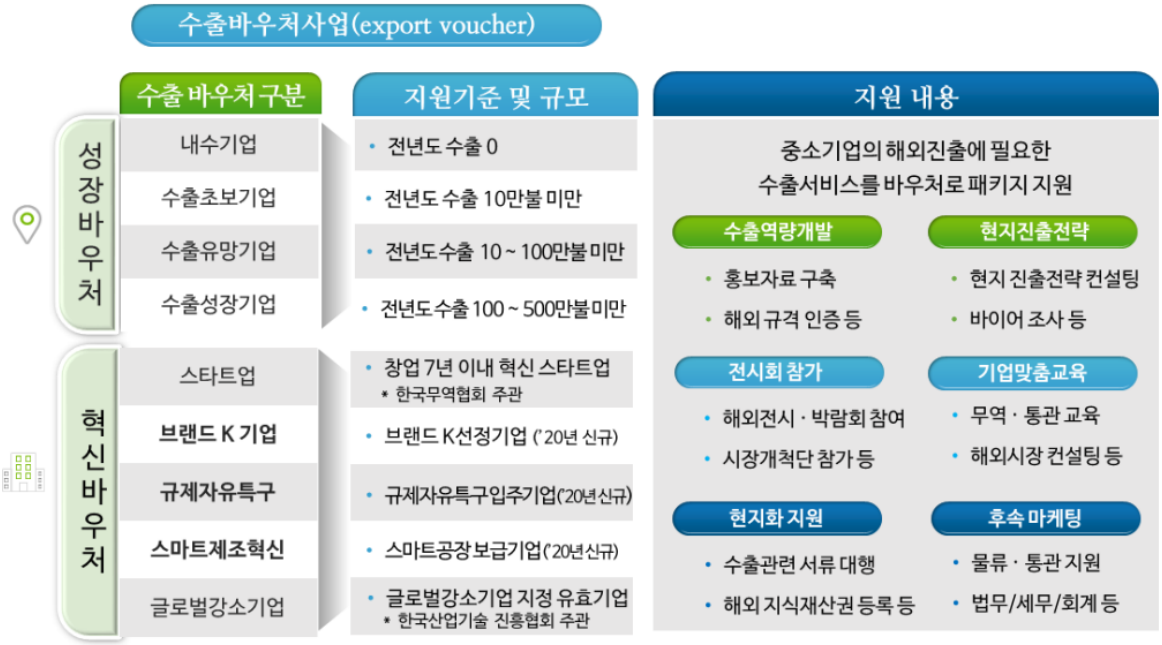

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

가. 사업개요

○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을 통하여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나. 지원규모

○ 약 100억원

○ 무역사절단 78회, 해외전시회 13회, 수출상담회 3회, 지역특화해외마케팅 6회 등 약 100회

다.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해외유명전시회에 한국관 구성 또는 개별 전시회 참가 지원

○ 무역사절단: 해외세일즈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 해외바이어와의 수출상담

○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 방한 유치, 국내업체와 수출상담 기회 제공

○ 지역특화 해외마케팅: 지역/산업/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라. 지원대상

○ 수출중소기업 및 수출 희망 중소기업

마. 업체모집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세부일정 및 지원기간 확인 가능

수출인큐베이터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경쟁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교역 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 및 운영

○ 해외 주요 교역거점에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공간 제공 및 마케팅/법률/회계 등의 서비스 지원

* 운영규모 : 총 13개국 21개소 283실

① 중국(베이징/상하이/광저우/시안/충칭)
② 미국(뉴욕/LA/워싱턴D.C/시카고)
③ 베트남(호치민/하노이)
④ 일본(도쿄)
⑤ 싱가포르(싱가포르)
⑥ 미얀마(양곤)
⑦ 멕시코(멕시코시티)
⑧ 칠레 (산티아고)
⑨ 독일(프랑크푸르트)
⑩ 러시아(모스크바)
⑪ UAE(두바이)
⑫ 카자흐스탄(알마티)
⑬ 태국(방콕)

○ 지원대상

- 해외 진출 희망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유흥 사행성 업종 제외)

○ 지원내용

- 사무공간(12~20㎡ 내외) 및 공동시설(회의실, 상담실) 제공
- 임차료 지원(1년차 20%, 2년차 50%, 3·4년차는 100% 입주기업 부담)
- (공유오피스) 중소벤처기업 단기 해외출장 시 개방형 Co-working 공간 제공

○ 기업모집

- 연중상시(단, 공실 발생시 입주가능), 온라인 신청(http://hp.kosmes.or.kr)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TEL 051-740-4130~1

9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

가. 지원목적

○ 해외홍보 및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상품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수출 홍보마케팅, 검색엔진마케팅, 온라인구매오퍼 사후관리 등 수준별 맞춤형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출을 촉진

나. 주요 사업 소개

○ 온라인 구매오퍼 사후관리 지원

- 무역전담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고비즈코리아를 통한 구매오퍼 사후관리(인콰이어리 유효성 검증) 및 무역업무 단계별 지원으로 수출계약까지 One-Stop서비스를 지원

○ 온라인 구매오퍼 사후관리 지원

- 더 많은 기업의 제품 홍보를 위하여 온라인마케팅 활용성이 우수한 다국어* 상품페이지를 제작 및 고비즈코리아 등록을 통하여 해외바이어에게 회사소개, 제품정보를 노출해 실질적인 수출성과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문의 : 1588-6234)

- Google 등 글로벌 포털사이트 검색엔진 상위 노출을 고려한 설계 및 디자인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 구축을 지원

○ 검색엔진 마케팅 지원 (문의 : 1588-6234)

- 참여기업의 홈페이지를 Google 등 해외바이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글로벌포털사이트에 일정기간 상위 등록하는 서비스로 키워드 세부분석, 웹사이트 수정 등 검색엔진최적화(SEO)방식을 중점 지원

* 지원대상 : 외국어 홈페이지 보유 중소기업

○ 방한바이어 기업현장방문 지원 (문의 : 1588-6234)

- 해외에서 방문하는 바이어와의 상담이 예정된 중소기업이 무역상담지원 및 통역이 필요할 경우 무역전문가가 상담현장을 방문하여 무상으로 지원

다. 신청 및 접수

○ 고비즈코리아(http://www.gobizkore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라. 연락처

○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고객지원센터 : 국번 없이 ☎ 1588-6234

○ 고비즈코리아 대표 이메일 : gobiz@gobizkorea.or.kr

10 중소기업 건강진단사업

가. 지원목적

○ 업종전문가가 진단을 통해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정책을 연계지원

진단	해법제시	정책연계지원
· 경영 + 기술전문가 · 기술 및 산업 분석 · 핵심역량/경영성과 분석	· 기업개선 전략 및 로드맵 제시 · 혁신성장 솔루션 제공	· 정책자금, 연수, 마케팅, 수출, R&D 등과 연계 · 타기관 연계

나. 진단 및 개선로드맵 제시

○ 경영 및 기술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환경, 기업역량·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개선 로드맵 및 실천계획 수립

다. 정책사업 연계지원

○ 기업진단을 기반으로 애로해결 또는 성장에 필요한 정책사업을 맞춤연계 추천하여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

11 연수 사업

● 중소기업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실무 적용능력의 배양 및 신경영기법, 신기술 습득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 기술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

연수분야

교육기회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연수, 정책연수 등을 실시하여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 지원

**기술인력양성 중점, 우수한 연수인프라,
중소벤처기업 사내 연수원 기능 제공**

직무역량향상연수
중소벤처기업 재직자의 기술, 품질, 경영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

글로벌연수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및 수출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연수

기업맞춤연수
기업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연수프로그램(문제해결, 현장맞춤)

정부정책연수
정부의 분야별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연수
(정부시책, 취업연계, 국제연수 등)

최고경영자연수
중소벤처기업 CEO 실전경영 및 관리역량 강화 연수

이러닝연수
업무공백으로 교육참여가 어려운 재직자를 위한 상시교육 지원
(인터넷·모바일 연수, SME-MOOC)

중소기업연수원 현황

1982년 개원하여 37년간 150만명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인을 양성한
국내 최대 중소벤처기업 산업교육 전문기관

12 청년창업사관학교

가. 사업목적

○ 우수한 제조 창업 아이템 및 4차 산업분야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全 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기업으로 육성

나. 모집분야

○ 정규과정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대표자

○ 추가과정 :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졸업예정(7~9기) 창업기업 대표자

다.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단, 신청과제와 관련된 기술경력 보유자는 만 49세 이하까지 지원가능

- 예비창업자(사업자 미등록자)도 신청가능하나,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 추가과정은 나이제한 없음

라. 모집규모

○ 모집규모 : 1,035명 내외

신청권역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인원	신청기업 소재지
수도권 (강원포함)	본교(안산, 구리)	165명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서울	135명	
	인천	45명	
	경기북부(파주)	40명	
	강원(원주)	35명	
충청권	대전세종(대전)	40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충남(천안)	60명	
	충북(청주)	35명	
호남권 (제주포함)	광주	60명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전북(전주)	70명	
	전남(나주)	45명	
	제주	25명	
영남권	대구	40명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경북(경산)	60명	
	부산	50명	
	울산	35명	
	경남(창원)	60명	

*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4개 권역 내 청년창업사관학교 중 1곳에만 신청 가능

** 예비창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기준 권역내 1곳 신청 가능

마.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 최대 1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창업인프라 : 창업공간, 제품개발 장비 등 지원

- 사무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 공간
- 장비지원 : 3D프린터, 가공기 등 지원

○ 코칭 및 교육 : 창업교육, 사업화코칭(상시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 기술지원 : 3차원 측정 및 제품설계, 시제품제작 등

○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유통망 연계 등

○ 후속연계 지원 : 정책자금, 마케팅·판로, 투자유치 지원 등

마. 신청방법

○ 2020년 2월 6일(목) 17시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접수

- 세부일정은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s://start.kosmes.or.kr) 및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고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청년창업사관학교 TEL 051-305-9930~1

13 내일채움공제(기본)

가. 사업목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나. 가입자 혜택

○ 중소기업

- 핵심인력 장기재직 및 우수인력 유입으로 인한 기술 축적 및 생산성 향상
- 중소기업기여금(납입금)에 대해 전액 비용인정 +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① 비용인정 :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세액공제 : 당기발생액의 25% 또는 증가발생액(당기발생액-전기발생액)의 50%

○ 핵심인력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공제금 수령 + 복지 및 교육 혜택
- 5년 후 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다. 가입 대상

○ (중소기업)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 (핵심인력)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가입인원한도 및 자격, 학력, 경력 등 제한 없음

라. 가입 조건

○ (가입기간)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후 3~5년 선택 재가입 가능)

○ (최소가입금액) 5년간 2,000구좌 이상 (1구좌=1만원)

○ (공제부금 납입)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매월 34만원 이상, 「핵심인력 : 중소기업 = 1: 2↑ 이상」의 비율로 납입

ex) 핵심인력 11만원 / 중소기업 23만원

○ (공제금 지급이율) 연복리(분기별 변동금리, 홈페이지 금리 게시)

마. 가입 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https://sbcplan.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청약신청서(온라인 작성),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원(기업주 또는 법인), 공인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 첨부서류는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바. 방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지역본(지)부 방문

◇ 기업주와 핵심인력 동시 방문

· 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 기업주(또는 핵심인력) 단독 방문

· 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 대리인 방문(기업주와 근로자의 동시 방문이 어려운 경우)

· 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TEL 051-630-7445

1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는 장기재직(5년)과 목돈마련(3천만원 수준)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우수 청년인력의 유입과 인재육성을 통한 기술 · 노하우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 청년근로자 · 기업 ·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목돈으로 지급

나. 가입자 혜택

○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장기재직 및 우수인력 유입으로 인한 기술 축적 및 생산성 향상
- 중소기업기여금(납입금)에 대해 전액 비용인정 +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① 비용인정 :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세액공제 : 당기발생액의 25% 또는 증가발생액(당기발생액-전기발생액)의 50%

○ 청년근로자

-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 공제금 수령 + 복지 및 교육 혜택
- 5년 후 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다. 가입 대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 · 중견기업 (단,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청년근로자) 중소 ·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최대 만 39세)

** 사업주(대표자)의 특수관계인 제외

라. 가입 조건

○ (가입기간) 5년

○ (적립금액)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월 최소 12만원 × 60개월)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월 최소 20만원 × 60개월)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 적립)

○ (공제금 지급이율) 연복리(분기별 변동금리, 홈페이지 금리 게시)

마. 가입 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https://sbcplan.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청약신청서(온라인 작성),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기업주 또는 법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청년근로자 해당시) 공인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청년근로자)
※ 첨부서류는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발급번호 기재

○ (방문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지역본(지)부 및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방문

◇ 기업주와 청년근로자 동시 방문
· 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청년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청년근로자), 병적증명서(청년근로자),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 기업주(또는 청년근로자) 단독 방문
· 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청년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청년근로자),
병적증명서(청년 근로자 해당 시), 신분증(기업주, 청년근로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청년근로자),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청년근로자)

◇ 대리인 방문(기업주와 청년근로자의 동시 방문이 어려운 경우)
· 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청년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청년근로자),
병적증명서(청년 근로자 해당 시), 신분증(기업주, 청년근로자), 신분증(기업주, 청년근로자, 대리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청년근로자),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청년근로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TEL 051-630-744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제 1장 교육, 컨설팅 및 정보제공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선발
- 창업 기초교육, 상품화지원, 점포경영체험교육, 사업화지원을 패키지로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유망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시행시기 : '20. 1월, 6월 접수(연 2기수 운영)
- 사 업 비 : 166억원
- 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내용

- 창업 기초교육 및 상품화지원(약 4주), 점포경영체험교육(약 16주)
- 창업자금 :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보조금 일부지원(심사를 통해 선발)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접수–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를 통한 신청・접수
- 서류 및 면접평가를 통해 지역별로 교육대상자 선발(12개 지역, 기수 당 225명 내외)
-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 지원여부 심사(총 사업비의 50% 이상 자부담 조건)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TEL (042)481-452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TEL (국번없이)1357

2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목적

-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 가능성이 있는 생활혁신형 창업자에 융자 지원
- 성실 실패 판정 시 상환면제로 실패부담 최소화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시행시기 : 매월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 사 업 비 : 발굴 6.36억원, 연계자금 150억원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내용

- 생활혁신형 창업가로 최종 선정된 자에게 최대 2천만원 융자 지원
- 융자 신청 전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http://idea.sbiz.or.kr)를 통한 신청
- 창업준비도, 창업자 역량, 사업성 등을 서면 및 대면 평가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TEL (국번없이)1357

2.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3 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업목적

-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무분별한 창업 방지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전문기술교육 실시로 소상공인의 전문능력 향상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 시행시기 : 수시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 사 업 비 : 120억원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내용

- 전문기술교육(20,000명)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까지 (최대50만원 한도, 1인당 2회) 지원
- 경영개선교육(7,000명) 소비자 트렌드, 업종별 경영전략 및 CS교육 등 경영개선 교육 지원(국비 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수행)

신청방법 및 절차

- 전문기술교육 신청 전 e-러닝 교육 수강 필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edu.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 전문기술교육 : 교육생 모집→교육신청 · 접수→교육수강→교육비 지원신청
- 경영개선교육 : 교육생 모집→교육신청 · 접수→교육수강→만족도 조사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TEL (국번없이)1357

4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케팅 · 점포운영 · 경영진단 · 세무 · 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등은 10인 미만)의 음식,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지한 예비창업자
- 시행시기 : '20. 3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예정)
- 사 업 비 : 79.8억원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내용

-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현장 방문 컨설팅 제공으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성공적 업종전환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 사전진단컨설팅 시 소상공인 여부, 지원제외업종 등 확인
- 사업공고 - 컨설팅 신청 - 사업진단컨설팅 - 자부담금 납부 및 전문컨설턴트 선정 - 컨설팅계획서 작성 - 컨설팅 수행 및 결과보고 - 현장점검 및 결과평가 - 사후관리/성과평가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TEL (국번없이)1357

5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사업목적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등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9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
- 시행시기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사 업 비 : 1억원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신청방법 및 절차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신청-상담 및 지원결정-사건처리

문의처:대한법률구조공단	TEL (국번없이)13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TEL (국번없이)1357

6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사업목적

●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예비)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완료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 구성원은 최소 50% 이상이 지원제외대상 外 소상공인(5인 이상)으로 구성 (대기업은 소상공인협동조합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참여 시 사업신청 제한)

* 소상공인 정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同 시행령”에 따름

● 시행시기 : 사업공고일로부터 ~ 별도 마감일까지

● 사 업 비 : 207억원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내용

● 공동사업(5억원 한도 내) : 공동 브랜드 · 마케팅 · 장비 · R&D · 시스템 · 네트워크 구축 등

- 보조금 지원비율 : 정부(70~80%), 자부담(20~30%, 현금출자 원칙)

● 협업인프라 구축 : 협업전문교육 · 컨설팅, 인큐베이팅 등 지원

● 판로지원 : 소셜커머스, 토막광고. 수출, 박람회 · 전시회 참가, 지역판매전, V-커머스 등 온 · 오프라인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을 통한 신청 · 접수(http://coop.semas.or.kr/)

● 협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예비)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성, 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 등 심사-지원대상 선정-소상공인 협업 교육 및 사업지원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TEL (국번없이)1357

7 나들가게 육성

사업목적

- 동네슈퍼가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나들가게 신규 개점, 점포경영 지원, 나들가게 선도지역 등을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점포 총면적 165㎡ 미만(화장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 제외 매장면적)인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점포(슈퍼마켓)이며 나들가게 POS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POS 기기 보유
- 시행시기 : '20.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사 업 비 : 52억원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내용

- 점포경영 개선-부진점포 회생 지원(자부담 10%), POS 활용교육 등 지원
- 공동마케팅-나들가게 공동세일전 개최시 홍보물 및 고객사은품 지원
- 온라인 상품공급사-나들가게 POS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 가능
- 나들가게 선도지역에서 실시하는 모델숍 육성, 점포 시설 및 경영 개선, 점주 경영역량 교육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 가능

신청방법 및 절차

- 신규개점 지원 : 온라인 신청(www.nadle.kr)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POS 프로그램 설치 · 교육-개점완료
- 점포경영 지원 : 나들가게 POS를 통해 신청-점포경영 지원 실시-점포경영 지원완료
- 나들가게 선도지역 : 각 선도지역 지자체 발표 사업계획 및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TEL (042)481-3952,4583
	나들가게 POS 콜센터	TEL (국번없이)1566-9082
	소상공인지원센터	TEL (국번없이)1588-530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TEL (국번없이)1357

8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사업목적

-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0%대 수수료율의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도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는 사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동법 제9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한 소상공인
- 시행시기 : 연중(소상공인 가맹점 신청)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내용

- 소상공인(제로페이 가맹점으로 신청하여 등록해야 함)-결제수수료율 0%대 적용
- 인프라 및 홍보·마케팅 지원(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 예산, 지방비 매칭)
- 소비자 : 이용금액의 30% 소득공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공공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등)

신청방법 및 절차

-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 온라인 신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일부 지자체) 오프라인 신청
- 가맹점 등록신청-소상공인 여부 확인-QR코드 발송-가맹점주 앱 설치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TEL (042)481-3950,3990,453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로페이팀	TEL (042)363-7691,7696~7699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TEL (02)2095-5901~5929